



교수 신간소개

프란츠 폰 리스트, 『마르부르크 강령』

1882년 리스트가 마르부르크 대학 취임 기념으로 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 '형법의 목적사상'이라는 기념비적인 강연에 그 핵심이 담겨있고, 고려대 심재우, 윤재왕 교수의 번역에 차병직 변호사가 해제를 달은 책을 한권 소개한다.

법과대학 강의를

좀 듣고 나면 생기는 직업병이 있다. 이 병의 증상은

보통사람들이 쓰는 일상용어 대신 법학 전문용어를 상황에 맞든 맞지 않

든 최대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리와 계약은 조금 상투적이고, 의제와

추정, 유인론과 무인론, 방어권적 기본권, 제3자효 정도는 떠들어야 자신이 온전한 법률가가 되

어 있다는 착각을 착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형법의 경우도 구성요건쯤은 입에 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는 형법총론 앞부분에 나오는 절대적 형벌이론과 상대적 형벌이론을 내용의 이해도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울조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과 '상대적'은 무슨 뜻일까?

허공에 먼지가 날려도 다 이유가 있듯, 학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을 구사할 때도 이유가 있다. 대개 그 이유는 학문사,

즉 역사에서 찾게 된다. 물론 형벌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인류가 모여 살게 되면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잘

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벌을 주는 행태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인류학자들은 형벌이 인간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본능, 그러니까 충동이

나 격정에 따른 원시적이고 근원적 현상이라고 본다. 인간이 원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기독교적 맥락에서나 따질 일이고, 죄를 짓는 일이나 죄에

대해 벌을 주는 일은 모두 인간사회라면 어디에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가 언젠가부터 벌을 주는 일을 독점하면서 시작되었다.

국가가 자연발생적인 현상인가 라는 골치 아픈 문제는 제쳐두고, 적어도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면서부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필연적인지 또는

무엇 때문에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개인들 사이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건 국가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탓에 무언가 다른 정당성근거를 찾아야 했다. 이 때 먼저 등장한 생각이 '응보'이다. 즉,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정의로운 뿐만 아니

라, 그럴 때에만 국가도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나 따져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어야 한다.

런 철학자들의 이론까지 동원되어 19세기에는 이 절대적 이론이 절

건 **절대적으로 없는 법이다.**

1882년 봄에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 마르부르크에

이름은 프란츠 폰 리스트, 음악가가 형법까지? 아주 틀린 질문은 아니

까. 이 리스트는 스물다섯에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교수자격을 취득

교수가 된다. 기센에서부터 독일 형법학계에 혜성으로 떠오른 그는 마

목적·주류 형법학이 모두 목적 따위는 따지지 말고, 오로지 범죄에

데, 이 젊은 형법학자는 범죄가 아니라, 범죄자를 바라보면서 범죄자

사회의 격정과 충동에 불과한 것으로 비쳐졌고, 인류가 진보했다면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설령 형벌이 본능의 표출일지

하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인간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능력을 갖춘다고 한다.

즉,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가 올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형벌도 특정한 목적에 지향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에 맞게 수

단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따져야 하고, 관계라는 뜻에서 '상대적' 형벌이론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개개의 범죄자를 특별

하게 감안해서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곧 '특별예방'이다.

예방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범죄자는 형벌로 겁을 주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떤 범죄자는 교육을 시켜 다시 사회에 편

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이도 저도 아니면? 리스트는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뭇 간단한 대답을 제시

한다. 예컨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성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

에 적합한 수단을 잘 선택할 때에만 형법은 사람들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학자들은 이 점을 범의보호

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리스트 역시 형벌을 특별예방을 통한 범의보호라고 규정했다.

오늘날에는 형법교과서에 등장하는 상식이 되었지만 130년 전에만 하더라도 리스트의 이야기는 상당

히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형법의 목적사상'이라는 취

임강연을 '마르부르크 강령'이라고 부르게 됐다. 하지만 역사는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뺀다.

특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제거'한다는 식의 생각은 나치와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한

이후 형법학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게 되었다. 대

한민국의 입법자나 언론이라면 모르겠지만.



서는 전통에 따라 새로 초빙된 형법교수가 취임강연을 했다. 그의 다, 피아니스트 리스트와 이름까지 똑같은 사촌동생 리스트였으니 하고, 스물여덟의 나이에 마르부르크 바로 옆 도시인 기센대학의 르부르크 대학 취임강연의 주제를 '형법과 목적사상'으로 잡았다. 대한 합당한 대가로서의 응보만이 정의로운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응보는 원 그런 원시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라도, 그 본능마저도 일정한 형태를 갖추어야 비로소 진화가 가능

THINK, EVOLVE, ACT FOR ALL



고대법학

2012 Winter, Vol. 2

발행일 2013년 2월 10일, 제2호 발행인 박노형 편집인 정승환 편집부 편집장 이지현(47) 편집부 문선영(37), 이지은(37), 하성재(37), 김승현(47), 김혜경(47), 이윤석(47)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제보 02-3290-2871 기획·편집·인쇄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FAX 02-3296-3747



COLUMN 크림스(Crimson)을 아시나요?
전문연구센터 김인현 교수 고려대학교만의 특별함, '해상법'
PEOPLE OF KU LAW
Frank Bohn Prof. "학구열 높은 고대 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Zhang Lin Prof. 세계적인 로펌 훈련 통해 더 큰 인재로 거듭나길
KU NOBLESSE OBLIGE
김양현 삼원산업 회장 모교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고대맨'

Column

크림슨(Crimson)을 아시나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

“크림슨의 붉은 정열과 철쭉꽃의 곧은 함성은, 우리 모두의 자존심으로 영원토록 간직하여라. 우리 모두의 자존심으로 영원토록 간직하여라.” “석탑속의 굳은 지성과 포효속의 뛰는 야성은, 우리 모두의 자존심으로 영원토록 간직하여라. 우리 모두의 자존심으로 영원토록 간직하여라.” 고려대학교 응원가 중 하나인 ‘지야의 함성’입니다. 학생 시절에 맘으로 흥진한 친구의 어깨를 부여잡고 목청이 터져라 부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응원가의 첫 단어, 크림슨, 크림슨, 크림슨...



고려대학교의 색깔, 즉 교색(校色)은 크림슨(Crimson)입니다. 화기들은 보통 크림슨 레이크(Crimson Lake)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림슨은 빨간 색에 파란 색이 섞여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는 붉은 색입니다. 크림슨이 고려대학교의 색깔이 된 것은 1955년 5월 5일 개교 50주년 행사의 하나로 고려대학교 교기를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교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종전에는 보성전문학교 교기 위에도 글자만 고려대학교로 바꾼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유진오 총장은 1952년부터 1953년에 걸쳐 선진 각국의 대학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뒤, 새로운 교기의 필요성을 느껴 교기 제정을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때 유진오 총장이 직접

디자인하여 제정된 교기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교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기는 폭 63cm, 길이 90cm의 바탕에 폭 23cm, 길이 30cm의 방패형 문장을 그려넣은 것인데 그 바탕색이 바로 크림슨입니다. 1955년 교기 제정을 계기로 크림슨은 고려대학교의 색이 되었습니다. 유진오 총장은 크림슨을 교색으로 채택한 배경에 대하여 “나는 내가 1년 동안 연구원으로 있던 하버드 대학의 교색과 같은 진홍색(Crimson)을 교색으로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결코 하버드 대학을 맹종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선수복 장이나 응원기 등에 관용해 오던 붉은 색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이었다.”(유진오 著 襄城記, 285쪽)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려대학교는 붉은 색을 널리 사용해 왔는데,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여러 붉은 색 가운데 크림슨을 학교 표준색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크림슨이 어떤 색이기에 유진오 총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아주 오래 전부터 크림슨은 유럽에서 우아함과 품격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그 배경이 제법 흥미롭습니다. 크림슨을 얻기 위한 염료는 코치닐(Cochineal)이라는 곤충을 원료로 합니다. 코치닐은 중남미 지역에서 자라는 노팔 선인장(Nopal Cactus)을 먹고 산답니다. 원래 코치닐은 중남미 아메리카 주민들이 개발한 염료로서 면을 비롯한 직물에 색깔을 입히는 데에 쓰였습니다. 아메리카에 양이 들어오고 모직물 생산이 시작되면서부터 코치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코치닐 염료는 종전의 면보다 모직물에 더 잘게 색이 들기 때문이었다지요. 그런데 이 염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답니다. 염료 1Kg을 얻기 위해서는 코치닐 16만 마리가 필요할 정도였단니까요. 게다가 최고급의 코치닐 염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교미를 하지 않은 암컷만을 원료로 해야 하는 등 일손도 많이 가는 물품이었습니다. 코치닐 염료는 에스파냐의 멕시코 정복이 한창이던 16세기에 유럽에 알려졌는데, 코치닐은 에스파냐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를 점령하고 난 후 에스파냐로 보낸 값비싸고 신비스러운 염료였습니다. 유럽에서 코치닐 염료는 최고급 염료로서 왕·귀족·사제의 의상이라든가 회화, 태피스트리 등에 붉은 색을 입힐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수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색깔이니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색이 아니었지요.

고려대학교의 교색 크림슨은 우아함과 품격을 품고 있습니다. 개교 50주년 되는 해에 교색으로 제정된 크림슨, 그로부터 50년도 더 지난 2013년, 고려대학교는 개교 10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인식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교색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혹시 중남미 여행을 할 기회가 있거든 코치닐 농장에 들려 보는 것은 어떨지요, 그곳에서 천연 색소로 물들인 크림슨 색깔 옷도 한 벌 사서 입어 보아요. 요즘 대부분의 크림슨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인공색소를 사용해 색깔을 낸 것입니다. 대체로 인공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에 비해 품격이 덜하지요.

고려대학교 법학 108년, 이제 그 찬란한 역사의 중심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은 각양각색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공유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크림슨입니다. 크림슨은 열정과 품격의 상징입니다. **KL**



DEAN'S MESSAGE

2009년 출범한 로스쿨체제에서 고대의 피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법과대학/사법시험체제에서 고대 법대는 서울대 법대와 비슷한 수의 사시합격을 기록하였지만, 현재의 로스쿨체제에서는 25개 로스쿨이 변호사시험합격에 있어 일정 규모의 득과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의 관점에서는 법과대학/사법시험체제에서의 절대적인 우위 내지 차이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대 법대의 법학교육의 전통적인 우위를 회복 내지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체제적 한계가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중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고대법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고대 법대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와 자문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통하여 고대 법대는 학교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향후 중장기적 발전을 일관되게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개최되고, 첫 회의는 3월 초에 개최될 것입니다. 둘째, 법학교육의 국제화를 심화할 것

법전 아날로기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이윤식

법학도의 의무란 오직 법전에만 의존해 사안을 풀이하는 데 필요한 조항간 구조와 관계를 규명하고 쟁점을 해석한 후 순백의 종이에 유려한 필체로 답안을 복제하는 것. 하지만 8년간 법학을 공부했지만 법전과 친하지 않은 나는 법학도라 말하는데 부끄럽다.

그러나 법전과 그에 실린 조문들이 법학의 절대명제인 ‘순종의 도그마’로 ‘나 이외의 다른 규범은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오릇함은 나 같은 사이비 법학도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법전이 가진 후대의 불편함과 탐색의 불편함은 무겁고 귀찮음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의존되야 할 위치를 잃고 만다. 서측의 검은 마크에 의존해 어림짐작으로 조문을 찾는 과정은 번거로와 멀리하게 되지만, 교과서에는 친절히 조문번호와 내용이 상세히 분설되어 있어 결국 조문과 학설, 판례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혼화되어 기억에 남는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모든 법학도의 필수 앱인 ‘국가법령정보센터’와 ‘LawnB’가 제공하는 앱의 편의성은 무겁고 귀찮은 종이법전을 더욱 몰아낸다. 하루가 다르게 수 없이 개정되는 많은 조문들 뿐 아니라 부진정연대재무자간 절대효사유로 상계가 포함되는지 ‘당원’의 판단은, 몇 번의 태핑과 드래그만으로 4인치 디스플레이에 고스란히 떠오른다. 조문을 찾아보는 행위가 몇 메가바이트 안되는 앱에서의 몇 번의 손가락눌림으로 만날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되었지만, 조문을 찾는 행위 자체의 중요성은 법학에서 필수불가결하고, 여기에 있어서 종이를 넘겨가며 팔락거리는 아날로그는 아직 유효하다. 조문이 적힌 법전페이지는 저 푸른 법원(法源)을 향하여 흐르는 영원한 노스탤자의 손수건이다. 종이법전의 그 두꺼움은 법학사적으로 유의미한 수많은 사건들과 이론들의 정반합적 발전의 반증일진데, 앱에다 그 만한 의미부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회의감이 든다. 단지 아날로그적 향수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법전 뿐 아니라 극히 보수적인 학습환경이 지배하는 이 법학의 전장에서도 혁신은 일어났다. 강의실 책상마다 콘센트가 설치됐고, 안테나가 4개나 달린 AP가 설치됐다. 법학부를 입학했을 때 보이던 노트와 강의인간과 교과서가 실재 없이 넘어가는, 종이 냄새 나는 광경이 컷전에 울리는 펜타드래프 타자소리, 혹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정전식 터치패널을 쓰다듬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자보다 정확하게 밀줄이 그어지고, 교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강의내용들이 쿼터 자판 위에 산산이 아스라진다. 총천연색 디스플레이에 커서를 조준하고 글쇠를 방아쇠 삼아 발사된다.

이다. 그러나 이런 이진수의 전장에서도 여전히 파퓰어뉴기니의 나무들은 종이의 전제조건으로서 실천적 유용성을 갖는다.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란 펜을 들고 종이 위에 활자화된 조문과 이론에 밑줄을 쳐가며 보는 맛이 있어야 하는 것. 편의성은 떨어져도 그래야 개념과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박힌다. 단지 눈으로 텍스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밑줄을 긋고 손으로 개념과 구조를 정리해가며 법 논리적인 그림을 종이 위에 손으로 새기는 것. 그것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대체하지 못하는, 지배(紙背)가 지배(支配)하는 영역이다. 디지털은 라틴어로 손가락을 뜻하는 디지털에서 나온 말로, 손가락으로 하나 둘 헤아림을 하듯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편화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화된 법학은 정확하기는 해도 종합하고 인지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런 파편화된 지식들을 결국에 묶어내는 것은 바로 아날로그의 영역이다. 수많은 액정장치들이 일상화된 속에서 배터리가 방전돼 깜빡 거리던 기억도 깜빡 데고, 와이파이기가 잡히지 않으면 내 마음도 잡히지 않는 조바심 나는 디지털의 배신 속에서 종이 법전과 하드커버의 법서들, 그리고 춤을 추듯이 지면위를 미끄러지는 만년필은 디지털 속에서 굳건히 아날로그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장미가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Hier ist die Rose, hier tanze).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빌헬름 헤겔, 〈법철학〉, 서문. **K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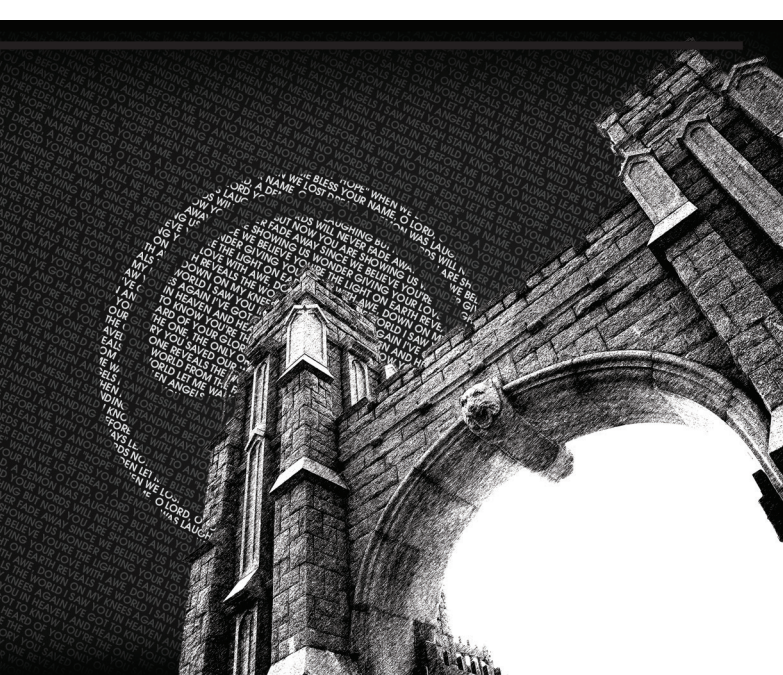
강의실에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탄두 없는 총성의 향연

박노형 드림

KNA (Korea Noblesse Oblige Academy) 최고위과정 개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각계의 지도적 인사들에게 고품격의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감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KNA최고위과정을 개설한다. 이 과정에서는 법과 문화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예술문화를 체험하며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적 트렌드를 익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여 건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교육 기간 2013년 3월 28일(목) ~ 2013년 8월 22일(목)
교육 시간 매주 목요일 18시 ~ 21시 10분
교육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
모집 인원 50명 내외
원서교부 및 접수시간 2013년 1월 2일 ~ 2013년 3월 초
접수장소 및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 02-3290-1421



Global KU

창간호에서 2012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새로 임용된 외국인 Qureshi 교수와 차진아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번 호에선 신입교수로 임용돼 이미 강의를 수 차례 진행해온 Frank Bohn 교수를 만났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김혜경



FRANK BOHN PROF.

“학구열 높은 고대 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Frank Bohn 교수는 1972년 독일 출생으로 결혼해 두 명의 자녀가 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독일의 Rostock과 영국의 Coventry에서 법학과 국제학을 전공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Reinhard Singer 박사의 제자로 박사과정을 밟았다. 2004년에는 라틴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아시아를 1년간 여행하며 세계에 대한 시야를 키웠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베를린과 짐바브웨의 법정에서 연수를 받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GRG의 베를린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 9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독일법과 유럽연합법 교수로 부임했다.

법학에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분야의 법을 전공하셨습니까?
시민법과 EU법을 전공했습니다. 시민법 분야는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미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진행하셨는데, 다음 학기 강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수업은 “European Union Law”와 “German Law”입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강의가 이루어지며, EU법 강의는 EU법의 기초에 대하여 그 구조와 역할, 이슈에 대한 입문에 해당하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독일법 강의도 독일법에 대한 소개로서 의미를 가지는 수업으로서, 법학에 대한 연구가 뛰어난 나라인 독일의 법적 체계와 독일의 법 그 자체에 대한 간략한 구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ZHANG LIN PROF.

세계적인 로펌 훈련 통해 더 큰 인재로 거듭나길



중국인이지만 유창한 영어실력을 자랑하는 Zhang Lin교수는 중국의 Shangdong 과학기술 대학교와 홍콩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Beijing De He Heng 로펌의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중국법에 관해 다양한 책을 집필했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오기 이전에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한국에, 특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오게 되셨는지요?

고려대학교는 한국,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전체가 영어를 기반으로 한 강의를 늘리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강점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 함께하고, 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재 로스쿨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각 하나씩 영감을 진

문화가 크게 다른 독일 출신으로 한국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돼 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고려대학교는 우수한 학교로 무척 잘 알려져 있고, 학생들과 교수 모두에게 면학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학구열이 매우 높고, 항상 열정적이기에 이들을 가르치면서 매 학기 마다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독일의 학문교류시스템인 DAAD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 교류의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처음 오게 됐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된 것 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다른 유수의 외국 대학 학생들과 비교해보면 어떤 특성이 있나요?

한국의 학생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굉장히 학구열이 높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아마 까다롭고 어려운 입학절차와 고려대학교 법학분야의 높은 경쟁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학생들이 학습의 효율성만 생각하고 배경지식이나 그 기초, 모든 상황의 원인 등에는 다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성취도와 결과물을 본 뒤엔 이런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친근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무척 행복하고 보람 있습니다. **KU**

행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중국법 입문]이며 중국법의 주요 분야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비롯해 학생들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명석한 학생들과 뛰어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은 활동적이고 성실하며 매우 도덕적입니다. 이곳의 학생들 또한 매우 예의가 바르고 똑똑하며 부지런하다는 인상을 받아 매우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물론 법학의 탄탄한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Magic Circle 이나 White Shoe 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로펌에서 훈련받을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복잡한 법학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수평선의 형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KU**

GRADUATE INTERVIEW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 국제거래전담부 소속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목혜원 선배를 만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들어봤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문선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도 학부와 같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수들과 파견 판검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주도적인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중에 학업 외에 기억에 남는 것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의 체육대회인 ‘어울림픽’이 떠오르는데요. 입학 초기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학우들, 교수님들과 어울려 땀을 흘리며 많이 친해질 수 있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현재 국제거래전담부에 소속이신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정이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고려대학교는 로스쿨을 개원할 당시 국제화를 모토로 삼아 학생들이 국제화 분야의 특성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제 분야 외에도 다양한 특성화 분야가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들어봤다.

1학년 때 기초과목부터 차근차근 배운 뒤에 관심 분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특성화 과정에 맞는 커리큘럼 속에 자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때 특성화 과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제통상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지도 그랬었고, 나중에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때 국제거래전담부 소속을 희망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화 과정을 이수하셨는지 설명해주세요.

저는 국제비즈니스법부 특성화 과정을 이수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국제거래전담부로서 현재 고등법원에서는 유일하게 국제거래사건을 다루는 부서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GLP(Global Legal Practice) 특성화 과정에 편성된 단계별 과목은 국제법무에 능통한 글로벌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과정을 통해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법까지 두루 익히지 않았더라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에 집중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본개념을 익히는 데 쏟아야 했을 겁니다.

후배들에게 앞으로의 대한 조언을 우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편견을 가질 때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보일 때에도, 변호사업계의 상황과 취업률에 대해 온갖 소문이 난무할 때에도, 실망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KU**

졸업 이후 현재 선배님의 근황을 알려주세요. 2012년 4월에 검사로 임관해서 지금은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신입검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자들을 아끼시는 교수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중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기간에 독감에 걸려서 매우 아팠습니다. 다음 날 민사소송법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짝궁 동기가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는 수액을 다 맞을 때까지 간호해 준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이 고마운 동기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치열하게 3년을 보냈고, 2012년 10월 교수회관에서 배중대 교수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에서 후배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하나만 꼽아주세요.

3년 동안 들었던 강의를 돌이켜보건대 각각 소중한 의미가 있어서 어느 하나만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가 되

고 싶은 분은 매학기 꾸준히 형사법 관련 과목을 모두 수강하시기를 권합니다.

선배님이 검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입학 후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면서 법률가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봉사정신을 키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실무 수업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검사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검사에 대한 꿈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실제로 일하시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아직 신입검사 교육 중이라 실제 검사 업무를 한 것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의 3개월간이었습니다. 사건에서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지혜와 교훈을 얻고 끊임없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곳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검찰입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강한 열정을 뒷받침해 줄 체력과 실력을 기르세요. 저는 교수님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튼튼한 실력과 법조인이 지녀야 할 단단한 마음가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KU**



“강한 열정을 뒷받침해 줄 체력과 실력을 기르세요”

김숙정 선배는 공익법률상담소(CLEC)에서 검찰 실무에 대한 꿈을 키웠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신입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문선영

고려대 로스쿨 최다 “우수” 평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8개 세부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우수’ 항목이 가장 많은 로스쿨로 평가받았다. 다만 1개 세부항목에서 인증을 받지 못해 전체적으로 ‘인증유예’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공지되었다. 이와 관련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을 본지에 게재한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

01 2013년 1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고려대 법전원”)은 평가 대상인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가장 많은 8개의 세부평가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서울대 법전원이 5개, 연세대 법전원이 4개, 성균관대 법전원은 2개의 세부평가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다른 주요 대학 법전원은 교육과정 영역에서 단 하나의 우수평가도 받지 못하였지만, 고려대 법전원은 이 영역에서 4개의 우수평가를 받음으로써 고려대 법전원이 교육과정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02 이렇게 다른 대학 법전원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고려대 법전원은 교원의 강의부담시간초과를 이유로 ‘인증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자의적이고 부당

하여 전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고려대 법전원의 교원 1인이 2011년 1학기 연구학기 후 2학기에 11시간을 강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는 한 학기 9시간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인증유예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사전에 공지된 평가기준(2011.11.), 평가매뉴얼(2011.12.) 및 그 해설서(2012.1.31.)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 해설서 등에는 기준 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학년 단위”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10~2012 질의응답집(2012.7.)에 따르면 교원강의부담을 “연(年)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평가 근거로 제시한 2012.6.11.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답하였으나, 이는 기준의 평가기준 및 그 해설서 등과는 배치되는 것이고, 평가기간(2009~2011년) 이후의 것이므로 이번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불이합한 해석의 소급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03 교원의 강의부담시간기준은 평가기간 내내 자주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지침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 법전원은 이번 평가 대상 법학전문대학원들 중 가장 많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가기준의 잦은 변경과 자의적인 적용에 따라 지적된 교원의 강의부담시간 초과만을 이유로 인증유예로 평가한 것은 단순히 합리성 결여의 문제를 넘어 평가 자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4 이러한 자의적인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저해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에 고려대 법전원은 평가위원회에 이번 평가 결과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의 자의적 부당함 및 부당한 평가결과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KL**

영역	평가결과(P/F/판정)				항목	평가결과(P/F/판정)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1. 교육목표	P	P	P	P	1.1. 교육목표의 적절성 1.2. 자체평가	P	P	P	P(우수)
2. 입학전형	P	P	P	P	2.1. 입학전형 계획의 타당성 및 공정성 2.2. 입학자격 및 선발	P	P(우수)	P	P
3. 교육과정	P	P	P	P	3.1. 교육과정의 편제 3.2.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3.3. 수업의 효율성 3.4. 학사관리의 임정성 3.5. 실무필수 과목의 적절성과 충실성 3.6. 국제화 및 특성화	P(우수)	P	P	P
4. 교원	F	P	P	P	4.1.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다양성 4.2. 교수개발 지원 4.3. 전임교원 연구성과	P	P	P	P
5. 학생	P	P	P	P	5.1. 학생상담 및 지도 5.2. 학생복지 5.3. 장학제도 5.4. 졸업생의 사회진출	P(우수)	P	P(우수)	P
6. 교육시설	P	P	P	P	6.1. 교육시설 일반 6.2. 필수기본 시설의 확보 6.3.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확보	P(우수)	P	P	P
7. 교육연구지원	P	P	P	P	7.1. 재정조달의 적절성 7.2. 재정분배의 적절성 7.3. 행정지원 7.4. 연구소 지원 7.5. 리절클러닉 지원 7.6. 규정 제정 및 위원회 설치	P	P(우수)	P(우수)	P
8. 관련학위과정	P	P	P	P	8.1. 법학사 학위과정의 배치 8.2. 관련학위 과정 운영 8.3. 기존 법학부 과정의 교육	P	P	P(우수)	P(우수)
우수평가 수						8	5	4	2

‘법과대학 3번째 건물’ CJ법학관 준공식 열려



2012년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법학관 신관 앞에서 CJ법학관(제3법학관) 준공식이 열렸다.이로써 고려대학교의 법과대학은 법학구관, 법학신관, CJ법학관 3개의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 9일 법학관 신관 앞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병철 총장,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강선보 교무부총장, 염재호 행정대외부총장을 비롯한 내외빈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서는 신축건물 증정과 감사패 증정, 건물 투어 등의 행사가 있었다.

김병철 총장은 “CJ법학관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법조인 양성에 기여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학교의 법과대학이 더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CJ 그룹 회장은 “CJ법학관이 고려대의 법통성을 잇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J 법학관은 법과대학 학생들과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진, 외부 인사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CJ측은 새 법학관이 우리나라 법률 문화 수준을 향상하는데 일조하며 후배들이 이곳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J법학관 개관 기념 학술대회 개최

지난해 12월10일, CJ법학관 베리타스 홀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최 CJ법학관 개관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정영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대회는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우리나라 법학에서 고려법학이 가지는 의미와 학계에 미친 영향, 앞으로 고려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1부는 상법학 정찬형 교수, 민법학 김재만 교수, 노동법학 박지순 교수, 민사소송법 정영환 교수가, 2부는 헌법학 윤영미 교수, 행정법 김연태 교수, 형법학 홍영기 교수, 국제법 강병근 교수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KL**

정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김승현

2012 고대 법대 교우회 행사

2월 총회 개최

법대교우 800여명이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 모여 교우회 회칙 개정 의결과 함께 2012년도 결산자료를 승인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이어서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으로 주선희 헌법재판관과 김일수 고대 법대 교수를 시상하고 2011년 하반기에 각계에서 영진한 교우들을 선정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함께 각종 고시합격생들과 학계 언론계 재계 유망청년교우를 선정하고 축하했다. 초청가수 인순이 공연도 교우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4월 회장단회의

2013년 행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회장단회의를 인터컨티넨탈호텔 아이리스크에서 가졌다.

6월 운동부 후원금 전달

법대교우회는 고대교우회, 이과대교우회와 함께 아이스하키부를 후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다.



7월 7일 제2회 법대교우회 바둑대회

김종민 회장 주창으로 작년에 이어 한국기원 대국실에서 모든 법대교우가 참석할 수 있는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갑을병 세 조로 나누어 개최한 행사에 많은 교우가 참가하여 평소 각자 갖고 있던 기력을 겨뤘다. 모교출신 프로기사들을 초청해 엄정한 심판을 통하여 입상자를 가려 푸짐한 상품을 시상했고, 얻기 쉽지 않은 전문기사와의 지도대국 기회를 주선했다. 참가자들의 갈증을 풀었다. 특히 회장님이 행사비를 부담하고 많은 선물 찬조가 있어 참가자 모두가 선물을 손에 들고 동기와 뒤풀이를 하는 등 화합과 우정으로 이어져 다른 단과대학 교우들의 부러움을 샀다.



정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이지현

8월 29일 영진교우 축하연

각 계에서 2012년 상반기에 두각을 나타내어 영진한 교우들을 선정하여 매년 상 하반기 두번에 걸쳐 축하했다. 이번 행사엔 이미 각 계에서 큰 성취를 이룬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함께 축하하고 나아가 더욱 정진하라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8월 29일 교우회 사무실 이전식 및 동기회장단 간담회

CJ법학관이 준공돼 507호에 “법대발전위원회”라는 현판으로 법대교우회 사무국을 이전하였다. 이 자리에는 법전원장님을 비롯법 전원 교직원들과 법대교우회장님, 그리고 각 동기회장단이 참석해 사무국 이전을 축하하고 법전원과 법대교우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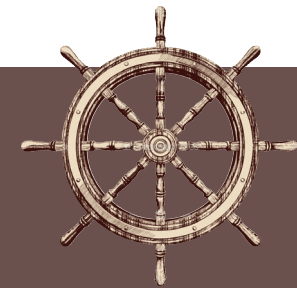


10월 25일 고문 자문역 초청 간담회

평소 법대교우회를 위하여 큰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고문 자문역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대교우회의 현황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학술행사 일지

- 2012. 10. 23 형사법과 범죄주의, 김지형 대법관
- 2012. 10. 23 ICR센터 외국 저명인사 초청특강 경찰의 수사기획면 위에 놓여있는 시뮬, Prof. Dr. Clemens Arzt (베를린 경제사법 대학 교수)
- 2012. 10. 23 제31회 해외저명인사특강 인권문화를 통한 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중국 산둥대학교 법학원 원장 Qi Yanping
- 2012. 10. 30 제32회 해외저명인사특강 Becoming An International Lawyer, Charles R. Irish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Law), Vladimir Kurilov (Dean,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School of Law)



선장(Captain) 김인현 교수

고려대학교만의 특별함, '해상법'

고려대학교는 서울에서 해상법강좌가 제대로 개설되는 유일한 학교다. 1학기에는 '해상법', 2학기에는 Law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강좌가 개설되고 이 두 강좌와 다른 관련 두 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 해상법전문인증이 주어진다. 항해사와 선장 경력이 이채로운 김인현 교수를 만나 고려대만의 특별한 해상법 강좌 커리큘럼과 국내 해상법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싱가폴 국립대학교(NUS) 법과대학 도서관



1기 오지현과 함께

'선장'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함께 하는 교수님의 독특한 약력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1982년에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산코 기센'이라는 당시 세계 최대 부정기 선사에서 10년간 항해사와 선장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해상법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에 1년간 준비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1994년에 입학했습니다. 1995년 9월 석사과정을 마칠 무렵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상팀에서 해사전문역으로 근무하며 학업을 이어갔고, 1999년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교직에 있으면서 2003년부터 1년간 미국 텍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법과대학에서 법학석사과정을 다니며 영미법을 익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고려대 학부에 학사편입을 해 2006년까지 법학일반에 대한 공부를 더했습니다. 그 뒤 부산대학교 법학대학을 거쳐 고려대학교에는 2009년 부임했습니다. 이후 2012년 1학기에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에서 6개월간 영미해상법을 연구하였습니다.

해상법은 실무각각이 필요한 학문이지만 선장 출신의 전공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드물어 제가 국내외에 여러모로 활동할 영역이 많습니다. 국제 연합 국제 무역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운송법회의에 5년간 한국대표로 활동했고, 지금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과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장시절 법학을 공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항해사를 하면서 용선계약서와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 같은 것을 많이 접했는데, 관련한 일본책이나 영국책들이 배에 있어 읽어보게 되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선장이 된 후 해난사고로 화주가 운송인인 선주를 상대로 호주 시드니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선장으로서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며 해상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소송에서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화주의 손해가 항해 중 선장이나 선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 면책되는 항해과실면책이라는 제도에 관해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고, 상대 측의 선장출신들이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며 소송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법률적인 소양을 갖춘 선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1년을 혼자 독하게 공부했고 명문 고려대의 채이식 교수님 연구실 조교가 되며 법학을 시작했습니다. 법학에 대한 필요성과 뚜렷한 목표가 있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상법전생님들이 법전에 나오는 선장이 왔다고 좋아하시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전국에 관련강좌를 개설한 법학전문대학원은 거의 없는 만큼 고려대학교 해상법 강좌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좌 커리큘럼을 소개해주세요.

고려대학교는 해상법 교수가 두 명이 있는 국내 유일한 학교로, 한국과 영국변호사인 채이식 교수님과 선장 출신인 제가 전임교수로 있습니다. 1학기에는 '해상법', '해상보험법' 2학기에는 Law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선박충돌법' 총 4과목이 개설됩니다. 2학년 겨울방학에는 싱가포르 최대로펌인 라자&탄에 다녀오고 3학년 여름방학에는 승선실습을 하는 등 맞춤형 해상변호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두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한국도선사협회에서 한 학기에 500만원씩 1년에 두 명, 한국선급협회에서 세 명에게 3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 같은 장학금은 실무에서 해상법이 중요한데 서울에서 해상법강좌가 제대로 개설되는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의미 있습니다.

제 해상법 수업은 현장학습을 중시합니다. 인천항에서 선박에 승선해 실무를 익히고, STX 펜오션 법무팀을 방문해 실무를 설명받고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해상팀을 방문해 특강을 듣고 해상변호사들과 저녁을 함께 합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해상법 선상수업

어떤 내용을 더 집중해 공부해야 할 지 해상변호사의 장래는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맞춤형 해상법교육의 일환으로 한진해운에 10일 가량 승선실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식 강의과목은 아니지만,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는 해상법(선박건조법)연구회를 운영하여 현재 선박건조관련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11월 말에는 실무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해상법전문가 강좌를 개설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은 동아시아해상법포럼을 개최해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해상변호사와 해상법교수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이런 모임과 행사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실무와 연결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조시장에서 해상법의 현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가 해상법공부를 시작한 20년전인 1990년대 초반이나 지금이나 해상변호사의 숫자는 40여명으로 비슷한 반면 해운과 조선, 물류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법률수요도 많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1945년 광복 후 지금까지도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해운의 국제성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법률시장의 수요자인 업계에서 우리 해상법정을 불안정하게 보고 있는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한국의 해상법과 판례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한데, 실제로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는데도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해상법 교수들과 한국해법학회 등이 한국해사법정화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박회사나 조선소도 사내변호사를 선발하면서 해상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는 1년에 5명씩 앞으로 10년간 50여명의 해상변호사가 충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며 예방적 차원이나 분쟁해결 차원에서 법률수요는 늘어나지만 이를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산업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5%를 선

박이 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자체에서 해상법이 발전하고 외국도 이를 인정해 우리 해상법정이 애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해상변호사와 해상법 교수가 필요합니다.

해상법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해상법 전문법조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해상법이 상법에서 마이너에 속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분야가 아닙니다. 김앤장이나 태평양, 광장 같은 대형로펌에는 모두 해상팀이 존재합니다. 학문자체만으로 봐도 상법에서 말하는 이념을 가장 많이 구현하고 있는 법분야기도 합니다. 일본 상법도 회사법과 보험법이 떨어져나가고 현재 중직상행위와 해상법이 남아있는데 그만큼 해상법은 상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의 유지, 상거래의 원활화, 그리고 상대방 보호제도가 해상법만큼 잘 나타나있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해상법을 공부한다면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이론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론이 현실화된 법제도를 확인할 수 있어 제 해상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해운과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합하면 전세계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해상법도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런던 중심의 해상법과 보험법이 지리적으로 아시아권인 싱가포르 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물이 발전하는 곳에 법률도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해상법이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해상법 교수나 해상변호사의 수가 다른 법분야에 비해 작기 때문에 진입하는 수요도 작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고 성실하다면 쉽게 전문성을 갖추고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상법 분야는 경쟁이 적은 틈새시장입니다.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전문해상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해상로펌에서 외국변호사와 4~5년 같이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해상법 내용과 해상법 판례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운송계약 등은 국제적(삼의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화주나 운송인에게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분쟁 해결지를 한국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한국법이 이것이 라고 알려주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영연방이었던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법 조문이 번역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차원을 넘어서 주석서가 영어로 발간되고 우리 해상판례 등이 지속적으로 외국에 소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채이식 교수가 한국의 해상법을 소개하는 영어서적을 발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인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해상법교수와 해상변호사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해결하여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10여명이 모여 한국해상법 주석서를 영어로 편찬하고 해외에 공급하는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고려대 해상법이 이런 일의 구심점이 되어보겠습니다. KL

고려대학교 전문인증과정



새로 생긴 CJ 법학관에 해상법연구센터 공간을 마련하였다. 해상법(Maritime Law)은 고려대학교 전문인증과정의 하나로 해상법, 해상보험법 등을 수강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상법 전문인증서가 발급된다.

고려대학교 해상변호사 양성 맞춤형 프로그램

- **수업 및 강좌** 해상법, 해상보험법, The Law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선박충돌, 기타 보험법, 국제거래법 등 수강 가능
- **담당교수** 채이식 교수(한국·영국변호사), 김인현 교수(선장, 법학박사) 강의
- **국내외 로펌, 해운회사, 기관 등에 실습 및 실무연수 기회** 마련됨.
 - 싱가포르 라자 & 탄 및 SIAC, 홍콩 리드 스미드 리처드 버틀러, Wintel
 - 서울 선운, 부산 해원 확정, 기타 각 로펌 해상팀과 접촉 중.
 - 3학년 여름방학에 선박승선실무(한진해운)
- **장학제도** 총 1900만원, 5명이 혜택을 볼. 취업과 실무실습, 학교 수업을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해상법 전문가 일을 시작.

해상법연구센터 개원 기념 특강 시리즈

해상법연구센터는 CJ 법학관에 연구센터 공간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해상법 실무과정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강의를 듣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특강을 마련하여 한국해상법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특강 I** 2013. 2. 1.(금)~2.2.(토) 선박충돌특강
- 특강 II** 2013. 2. 15.(금) 및 2.16.(토) 해운조선기업의 구조조정관련법 특강

문의 및 참가신청 captainhkim@korea.ac.kr
김인현 교수, 02-3290-2885(유동윤 조교)

인권 사각지대에 내리는 단비 한 모금

현재 전속적으로 공익법률 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20명 남짓으로 적은 숫자이기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공익법률 분야를 지원하는 법조인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센터(CLEC)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본 바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공익인권 분야 법률사무소에 대해 살펴보고, CLEC의 근황을 소개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김승현

공감 2004년 발족한 공감은 공익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변호사 모임이다. 공감은 비영리 전업적 공익변호사들의 단체로, 변호사와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빈곤, 취약계층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희망을 만드는 법 2012년 3월 창립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서는 변호사와 활동가 등 7명이 활동하고 있다. 희망법은 공익법률활동을 지속하면서도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익법률과 관련하여 공익법센터 어필, 재단법인 동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희망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김동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언제,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나요?
 이 단체는 소수자 인권 문제와 전업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던 변호사들이 창설했습니다. 여섯 사람이 2011년 8월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고 약 8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올해 3월 정식으로 창립하였습니다.

현재 어떤 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현재 6명의 변호사와 1명의 비변호사 활동가 등 총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선영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조혜인변호사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또, 한가람변호사는 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왕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최초의 시각장애인변호사로서 서울대 로스쿨 입학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저와 류민희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에서 만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제인권법연구소의 인권법 여름학기를 함께 수강했고, 박상미 사무국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활동하다가 올해 8월에 합류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프로보노 활동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고, 로펌들도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과 차별화된 희망법만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희망법의 특성은 전업적 공익변호활동이라는 것과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업적 공익변호활동'과 '비영리의 운영형태'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희망법 변호사들은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공익인권영역에 투여합니다. 공익인권사건이라 판단하여 희망법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으로부터 변호사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희망법이 첫 번째로 맡은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소개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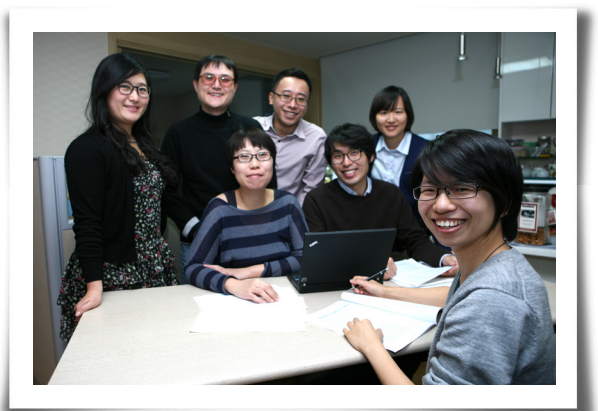
합니다. 희망법은 피고인 서울시의회를 대리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성과를 조례의 유효화에까지 미치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노현교육감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과 그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 등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치열한 법리공방이 계속 중이고 저희 희망법 변호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특히 관심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출입국영역입니다. 현재 강제퇴거처분을 다루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법률가, 특히 고려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특히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전 새로운 공익인권단체를 만들 생각을 하며 다양한 분들을 만나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제게 "많은 변호사영역이 포화이고 레드오션이지만 공익영역은 '재정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블루오션이다"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약 10개월여 일하면서 이 말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익인권분야는 아직도 많은 전업공익인권변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법과 공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공감은 공익법운동의 확산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많은 활동을 하여 왔고 희망법의 창립에도 '열렬한' 지지와 후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공감과는 조금 다른 활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보다 현장과 가까이 하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어요. 강정 파견활동도 그러한 차원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독립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아름다운재단'에서 탄생하였고, 저희보다 유연한 후원기 준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희망법은 구성원의 출자를 한 단생으로, 보다 엄격한 후원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 제네바에서 만났던 한 인권단체 활동가가 제게 해준 말을 인용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으면 합니다.
 "제발 좀 쓸모 있는 변호사가 되어 달라" **KL**



CLEC 학회소식

CLEC 사무실 이전
 2013년 1월, CLEC 사무실이 C법학관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새단장한 사무실에는 의뢰인과의 상담에 용이하도록 상담실 및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전에 비해 접근성 또한 용이해졌다. 클리닉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꾸준히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방학 기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건 해결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클리닉' 신설
 일반법률상담팀, 공익인권클리닉, 인터넷클리닉, 사회적기업팀, 국제인권클리닉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던 CLEC는 2012년 9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협력공동 서명 아래 '국제인도주의법클리닉'을 신설하였다. 국제인도법이란 인도 원칙에 기초하여 무력분쟁의 전략적·전술적 조건을 규제하고 개인의 보호와 존엄의 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제법규의 총칭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인간의 고통경감 및 생명존중 등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적십자의 가치를 연구하고 숭고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확산시키며 국제인도법을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내에서 IHL 증진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국제인도법 연구소와 법학전문대학원 수준의 IHL 보급 및 확산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클리닉이 신설되었다. 국제인도주의법클리닉에서는 2012년 12월, 대한적십자회와 한국국제법학회 주최, 문화재 침탈에 관한 제31회 국제인도주의법 세미나에 참석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ICRC 홍보담당자와 국제인도주의법연구소와 함께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리셉션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향후 국제인도주의법의 근간이 되는 제네바협약의 여러 조약에 대한 연구 및 ICRC 분쟁해결 관련 케이스리운드를 통해 활동할 예정이다. **KL**

모교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고대맨'

GRADUATE INTERVIEW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김승현



석정회라는 이름의 '석'은 고려대를 뜻하는 것으로 둘과 같이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고, '정'은 법학도의 필수 덕목인 정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KU 석정회 활동 외에도 학교에 많은 후원을 하셨죠?
 법학관 구관과 신관, CJ법학관을 지을 때마다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우의 한 사람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다른 교우들을 도와 모금활동과 같은 실무적인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행정학과가 법과대학 소속일 때 행정고시동진립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KU 활발한 후원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히 모교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대를 지원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유진오 교수가 재직 중인 고려대를 지원해보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고려대학교에도 원서를 넣게 되었고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에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과 유대관계 같은 고려대학교 특유의 문화를 체험하며 모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되었고, 1학년 때부터 학생회장, 대의원,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 체육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활동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KU 석정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석정회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56학번 동기들 몇 명과 법학과 동기인 장덕진씨가 졸업 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던 중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석정회라는 이름의 '석'은 고려대를 뜻하는 것으로 둘과 같이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고, '정'은 법학도의 필수 덕목인 정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장학활동은 1966년에 처음 시작해 매년 한 명씩 늘어나 나중에는 한 학기에 열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함께 석정회 활동을 했던 동기들이 직업전선에서 하나 둘씩 물러나게 되면서 기금 조성이 점점 힘들어져 현재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 석정회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을 중심으로 장학활동이 계속 이어져나가길 바랐는데 현실

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KU 석정회 활동 외에도 학교에 많은 후원을 하셨죠?
 법학관 구관과 신관, CJ법학관을 지을 때 때마다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우의 한 사람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다른 교우들을 도와 모금활동과 같은 실무적인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행정학과가 법과대학 소속일 때 행정고시동진립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KU 활발한 후원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히 모교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대를 지원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유진오 교수가 재직 중인 고려대를 지원해보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고려대학교에도 원서를 넣게 되었고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에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과 유대관계 같은 고려대학교 특유의 문화를 체험하며 모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되었고, 1학년 때부터 학생회장, 대의원,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 체육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활동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KU 석정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석정회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56학번 동기들 몇 명과 법학과 동기인 장덕진씨가 졸업 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던 중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석정회라는 이름의 '석'은 고려대를 뜻하는 것으로 둘과 같이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고, '정'은 법학도의 필수 덕목인 정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장학활동은 1966년에 처음 시작해 매년 한 명씩 늘어나 나중에는 한 학기에 열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함께 석정회 활동을 했던 동기들이 직업전선에서 하나 둘씩 물러나게 되면서 기금 조성이 점점 힘들어져 현재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 석정회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을 중심으로 장학활동이 계속 이어져나가길 바랐는데 현실

KU 고려대학교가 회장님께 가지는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입학 당시부터 지금까지 품고 있는 모교에 대한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대가 아닌 고려대를 택했던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대로 갔던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KU 학교를 위한 여러 활동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처음 석정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수혜자들에게 어떤 보답 같은 것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후배들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들 개인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고려대학교에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장학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재직식 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 오용석 변호사가 자신들이 학생 때 석정회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무척 반갑고 말할 수 없이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KU 법과대학이 새로운 체제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되었는데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서 우수한 전통을 가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단과대가 존속하길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법학과 학생들과 같은 교우입니다. 비록 학부는 다른 곳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끈끈한 정을 가지고 고려대라는 이름 아래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진정한 고대의 학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법과대학 교우회도 같은 교우를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힘써주길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도 법과대학 교우회는 물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일원이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부가 고대가 아니니 나는 교우회와는 별개의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려대에 몸을 담고 있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우로 유대감을 느끼며 진정한 '고대맨'이 되기를 바랍니다. **KL**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학회 출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학회가 출범하였다. 2013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56명이 모두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여 매학기 학년별로 1명씩 3명의 로스쿨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적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교수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우수한 인재를 뒷받침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앞으로 장학금 규모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인재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수들의 숭신수범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와 교우들이 미래 한국사회를 책임질 젊은 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로 고려대 로스쿨에서는 360여명의 재학생 중 약 60% 정도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학기금을 더 확충하여 학생들이 지도자적 법률가로서의 전문능력을 배양하는데 전념하도록 할 것이다.